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   | <b>‘12. 3. 12(월) 조간부터</b>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 포 일 시 | 2012. 3. 9 (금) 16:00      | 담당부서  |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과장    | 류광준 (2150-4350)           | 담 당 자 | 황인웅 서기관(2150-4351)<br>문진주 사무관(2150-4354) |

## **제목: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**

□ (조세정보교환 국제공조 확대) 기획재정부는 ‘09년 이후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

①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강화,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 체결, ③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등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·강화

\* ‘08년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되고, OECD 정보교환 기준이 국제규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‘09년부터 국제적 정보교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

### ① 조세조약 제·개정시 정보교환 강화

○ 조세조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 개정시 금융정보 제공 등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보교환을 대폭 강화

○ ‘09년 이후 20개국과 조세조약을 제·개정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였으며, 현재 비준절차 진행 중

- 제정 12개국: (국회 비준동의 1개국) 파나마  
(서명 3개국) 콜롬비아, 우루과이, 가봉  
(가서명 8개국) 리비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바레인, 가나, 브루나이, 페루, 에콰도르

- 개정 8개국: (국회 비준동의 1개국) 스위스  
(서명 2개국) 싱가포르, 벨기에  
(가서명 5개국)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호주, 말레이시아, 오스트리아

※ 개정 한-스위스 조세조약의 경우 '12.2.27 국회비준되었으나 스위스측 국내절차\*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경 발효\*\* 예상

\* 스위스의 경우 작년말 하원을 통과하여, 금년 3월중 상원 통과 및 유예기간(100일, 필요시 국민투표 실시)을 거쳐 7월중 비준완료 예상

\*\* 하반기에 발효되더라도 2011년도 관련 정보부터 교환할 수 있고, 은행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요청 가능

##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(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) 체결

○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별도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, '09년이후 14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비준절차 진행중

- 국회 비준동의 완료 2개국: 쿡 아일랜드, 마셜 군도

\* 당사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지하면 발효

- 서명 2개국: 바하마, 버뮤다

- 가서명 10개국: 사모아, 건지, 케이만제도, 바누아투, 라이베리아, 세인트루시아, 저지, 앵귤라, 코스타리카, 영국령버진아일랜드

## ③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(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) 가입

○ OECD 회원국(개도국 포함) 중심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·징수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(현재 34개국 가입)에 가입

\* 금융정보 포함, 피요청국 조세목적상 필요와 관계없는 정보도 수집·제공, 정보교환 방식 다양화(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외에 자동 정보교환·자발적 정보교환도 포함)

- '12.2.27 국회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3월중 OECD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, 기탁일 3개월 후 발효

-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\*와는 **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** 금융정보 등의 자동교환이 가능해짐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입국<br>(34개) | 벨기에, 캐나다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아이슬란드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, 미국, 그루지아, 우크라이나, 한국, 멕시코, 포르투갈, 몰도바, 아일랜드, 아르헨티나, 호주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일본, 러시아, 남아공, 터키, 인도, 아제르바이잔, 그리스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**(정보교환 관련 조약·협정 개정절차 간소화)**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**조세정보 교환과 관련한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·개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**

- 금년부터 **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을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·개정하는 경우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** 관련 법령을 보완

\*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·개정 절차 (종전)

(조세조약) 가서명 → 법제처 심사 → 국무회의 → 서명 → 대통령 재가 → **국회 비준동의** → 비준서 교환 → 발효

(정보교환협정) 가서명 → 법제처 심사 → 국무회의 → 서명 → 대통령 재가 → **국회 비준동의** →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지 → 발효

- 이에 따라, 현재 비준절차 진행중인 **바하마·버뮤다 등 12개 정보교환협정은 앞으로 국회비준을 받지 않고 대통령 재가로** 국내절차가 완료됨

- **(국제 평가)** 이와 같은 조세정보의 국제공조 확대 노력으로 최근 **OECD Global Forum의 과세정보 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관한 Peer Review에서, 우리나라의 조세정보 교환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**

\* '12.3.5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

- (향후 계획)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이 미흡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·지역들과 제·개정 협상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계획
-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조세정보 교환이 미흡한 국가와는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 (예: 네덜란드, 이집트, 인도네시아 등)
- 조세조약의 신규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 (예: 홍콩, 그루지아 등)
-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 (예: 지브롤터, 안도라 등)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